

① 法院豫算締成權

○ 現行, 民正黨: 否

○ 民主黨: 是 ③

③ 政府는 法院이 編成

한 歲出豫算을 大法院

長의 同意없이 削減할

수 없다.

○ 豫算會計法 第 22 條에 의하면 大法院의 歲出豫算 要求額을 減額할 때에는 國務會議이 大法院長의 意見を 求하도록 規定되어 있어

民主黨은 多數派이 아니며, 憲法規定事項인 만큼, 條文의 位置도 맞지 않음.

○ 憲法 規定한 대로 司法府의 追加更正 豫算案 締成權도 같은 취지로 規定하여야 할 것임.

○ 實際로 大法院 등 獨立機關의 豫算 協調은 잘 되고 있음

○ 국가 기관의 예산 편성, 제안은 국가 전체의 세입, 세출을 총괄하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며, 정부의 責任임.

○ 국가 예산이 2수 되어 독립적인 예산 관리나 재정정책 수행 불가. 法院의 독자적인 세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세입, 세출의 균형 유지해야 하는 예산 편성의 원리에 어긋남.